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74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연구실사고 치료비 지원 기준(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진찰비, 검사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2. ~ 10.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할 것
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심사위원회”를 각각 “인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한다.

별표 4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점검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진단 실시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 월 미만인 경우		50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 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0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 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 월 이상인 경우		1,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 표 10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u>별표 6과 같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u> ③ ~ ⑧ (생략)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u>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 설>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
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

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
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
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
함할 것

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
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
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
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인증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회----- -----.
④ 제3항에 따른 <u>인증심사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u>인증심의회</u> 회-----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 제3항에 따른 <u>인증심의회</u> 의 심의 결과 -----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 락 처	(044) 202 - 4852